

2021 - 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 결정된 정비구역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1.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12	신수동	255-7	1.7	190%	60%	7	2	단독	2006.3.23. (서고시 2006-95호)
변경	해제									

2.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명	위치	사업방식	면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17,264.5	2010.6.3. (서고시 2010-209호)
변경	해제				

- ☐ 정비계획 변경(환원 및 폐지)
☐ 용도지역(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구분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7,264.5	-	17,264.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43.4	증)16,221.1	17,264.5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16,221.1	감)16,221.1	-	

○ 토지이용계획(폐지: 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합 계		17,264.5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120.5	18.0	
		도 로	1,862.9	10.8	
		소 공 원	942.5	5.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315.1	1.8	
	택 지 (획 지)	소 계	14,144.0	82.0	
		획 지 1	11,785.1	68.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2	2,358.9	13.7	종교용지
변경	폐지(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 높이(m)
	명칭	면적(㎡)					
기정	A-1	11,785.1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40%이하 (239.46%)	최고18층이하 (평균18층이하) /56m이하
	A-2	2,358.9	마포구 신수동 286-1번지 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A-3	315.1	마포구 신수동 279번지 일대	어린이집	6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변경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3. 지형도면: 따로 붙임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4) 및 마포구 주택과(☎ 02-3153-932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 위치도(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



- 정비구역 결정도(해제)

